

비전임교원 및 강사 징계위원회 규정

시행일: 2023.12.0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강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본교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징계사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구성)

-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 1. 본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경희학원(이하 “학교법인”이라 한다)의 이사
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법관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나. 대학에서 법학,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 - 다.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
 - 라.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.
 1.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“외부위원”이라 한다)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
 2.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

제3조(외부위원의 임기 등)

-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총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5.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4조(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제척사유) 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피 등)

-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,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제5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징계사유 및 종류)

- ① 총장은 비전임교원 및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, 징계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 1. 법령 및 본교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 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 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- ② 징계는 파면·해임·정직·감봉·견책으로 한다.
-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
-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보수의 1할을 감한다.
-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
제8조(징계의결의 요구) 총장은 비전임교원 및 강사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1.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
2.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
3. 징계사유서와 징계제청자의 의견서
4.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
5.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및 근무성적표

제9조(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) 총장은 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징계의결의 기한)

- ①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[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]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

할 수 있다.

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이 감사원·검찰·경찰·기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위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

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)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소행·근무성적·공적·개전의 정·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징계의결)

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④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⑥ 징계양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「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14조(징계사유의 시효)

① 총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

2. 공금을 횡령·유용한 경우

3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②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

③ 징계위원회의 구성·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위원 등의 수당)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징계 대상자가 속한 캠퍼스의 교무팀장이 담당한다

제17조(보칙) 위원회에 관하여 「사립학교법」 및 기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,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